

	<h2 style="margin: 0;">학생위원회 운영규칙</h2>		규정번호	5-0-6
			제정일자	1987.09.01
	개정일자	2013.07.26		
	개정번호	Ver.5 총페이지	2	

**제1조(설치 및 명칭)** 이 규칙은 학칙 제48조 2항에 의거 설치된 학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목적)** 위원회는 총장을 보좌하는 자문 심의기관으로서 학생지도 및 장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학생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구성 및 임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위원장은 학생부처장이 된다.
2. 위원은 총장이 위촉하는 전임교수 약간 명으로 한다.
3. 위원장의 임기는 당해 보직 기간으로 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3조의 2 (복지관리 소위원회 구성 및 기능)**

①복지관리 소위원회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위원회의 위원은 교직원 5인(학생부처장 포함), 학생대표 4인(총학생회 복지부장, 대의원회 복지부장, 학회장연합회 복지부장, 여자치위원회 위원장)으로 총장이 위촉하여 구성한다.
2. 위원장은 학생부처장으로 한다.

②복지관리 소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1. 위원의 임기는 학생위원회 위원 임기 또는 학생대표의 재임 기간으로 한다.
2. 당연직 이외의 위원은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③복지관리 소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의견을 수합하여 학생위원회에 상정한다.

1. 복지시설의 개선에 관한 사항.
2. 학생복지 환경에 관한 사항.
3. 교내 학생복지시설의 관리, 감독에 관한 사항
4. 학생서비스 평가에 관한 사항.
5. 기타 학생복지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④복지관리 소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4조(임무)**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생의 학내·외 행사 및 생활에 관한 사항
2. 학생의 상·벌에 관한 사항
3. 학생회 운영 및 활동에 관한 사항
4. 학생 복지에 관한 사항
5. 학생회 이외의 단체조직 및 활동에 관한 사항
6. 학생의 장학에 관한 사항
7. 학내·외 사회봉사 활동에 관한 사항

- 8. 본 위원회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 9. 기타 총장이나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5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은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③ 회의는 이 규칙 제4조의 임무와 관련하여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제6조(보고 및 시행)** ①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회의 결과를 지체없이 총장에게 보고한다.  
 ②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제7조(규칙의 제정 및 개정)** 위원회 규칙의 제정 및 개정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칙은 198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칙은 199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칙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201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 학생위원회 운영규칙은 이 규칙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5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7월 26일부터 시행한다.